**기술협력에 관한 비밀유지계약서 (NDA)**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비에스지 파트너스**(이하 "갑")와 **㈜알파솔루션**(이하 "을")이 상호간의 기술협력(이하 "본 프로젝트")을 진행함에 있어, 공개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15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본 프로젝트"의 평가, 기획, 개발 및 수행을 위해 양 당사자가 상호 공개하는 비밀정보의 보호 및 취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 등 형태를 불문하고 제공하는 모든 기술상, 영업상, 재무상 정보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소스코드, 알고리즘, API, 회로도, 설계, 기술 사양, 노하우 등 일체의 기술 정보
2. 사업계획, 고객 명단, 재무 자료, 마케팅 전략 등 일체의 경영 및 영업 정보
3. 본 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 그리고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의 내용 자체

② (비밀의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비밀정보에 "비밀(Confidential)" 또는 그에 준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표시의 누락이 정보의 성격이나 정황에 비추어 명백히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정보의 비밀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①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본 프로젝트"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임직원을 "본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의무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3조의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정보수령자가 수령하기 이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
4.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와 무관하게 정보수령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이 경우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5조 (권리의 귀속)**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의 공개가 정보제공자의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양도나 사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모든 권리는 원 권리자인 정보제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및 파기)**

① 정보수령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모든 유·무형의 자료(사본 및 복제물 포함)를 즉시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파기하고, 파기 시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반환 및 파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정보수령자가 부담한다.

**제7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제3조, 제5조, 제6조의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5년간 추가로 존속한다

**제8조 (손해배상)**

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 (일반조항)**

① (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직접손해에 한해 1,000 만원**으로 제한하며, 갑은 을에게 **침해금지·가처분 등 비금전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완전합의)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상의 합의나 진술에 우선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7월 12일

갑 : 주식회사 BSG 파트너스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을 : 주식회사 알파솔루션

대표: 김 철 수 (인)